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81

발의연월일: 2022. 9. 7.

발 의 자: 조은희·김선교·김홍걸

박정하 • 배준영 • 서일준

서정숙 • 유상범 • 이명수

이태규 · 지성호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쉼터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구체적인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현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비교하여 사후 지원 대책에 차이가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 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,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 신설).

#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"청소년쉼터(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"을 "청소년쉼터를"로, "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"를 "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① 청소년쉼터(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후 청소년쉼 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  - 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  - 3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  - 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  - 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32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 제32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 소년쉼터 계속 이용) <신 소년쉼터 계속 이용) ① 청소 년쉼터(가정 밖 청소년을 7일 설> 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설치 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 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 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 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 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① 청소년쉼터(가정 밖 청소년 ② 청소년쉼터를-----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-----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설 치 ·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 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 년이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

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가정 밖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1. • 2. (생략)

②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
<신 설>

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③</u>
<u>제2항</u>
<u>.</u>
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국가 및
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후 청
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이
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
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
있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ㆍ

교육・취업 등의 지원

- 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- 3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- 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- 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

   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  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